

“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KOREA RESOURCE-RECYCLING ENERGY MUTUAL-AID ASSOCIATION

수신 전 조합원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

참조 소각시설 운영담당

제목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실시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및 지원 사업 관련 내용은 붙임의 리플릿 등을 참고하시어 지역별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 사업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 나. 지원대상 : 대기배출시설(1~5종) 운영 사업장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 다.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부착(의무)할 수 있는 자

- 붙임 : 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자체 담당부서 연락처 및 안내 리플릿 1부.
2. '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1부. 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담당 박종윤 팀장 한인성 상무 장기석 부이사장 김상배 이사장 박무룡

협조자

시행 한공조 2020 - 77호 (2020. 2. 21) 접수

우 04508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 13층(만리동1가, SKY1004빌딩) / www.krema.kr

전화 02-718-7900 전송 02-718-7171 / krema@krema.kr / 비공개

지역별 지자체 담당부서 및 연락처

지역	지자체	부서명	전화번호	지역	지자체	부서명	전화번호	
서울	본청	대기정책과	02-2133-4438	경기	광주	본청	환경관리과	032-613-4151
	강남구	환경과	02-3423-6227		대전	본청	미세먼지대응과	042-270-5692
	강동구	맑은환경과	02-3425-5935		울산	본청	환경보전과	052-229-3184
	강북구	환경과	02-901-6755		충청	본청	환경정책과	042-300-4232
	강서구	녹색환경과	02-2600-4016			본청	환경안전관리과	031-8908-3552
	광진구	환경과	02-450-7809			가평군	환경과	031-580-2442
	구로구	환경과	02-860-2263			고양시	기후대기과	031-8075-2655
	금천구	환경과	02-2627-1522			광주시	녹색환경과	031-760-2904
	노원구	녹색환경과	02-2116-3210			구리시	환경과	031-550-2325
	도봉구	환경정책과	02-2091-3244			군포시	환경과	031-390-0243
동대문구	맑은환경과	02-2127-4662	김포시	환경지도과		031-9801-5672		
마포구	환경과	02-3153-9268	남양주시	환경정책과		031-590-2340		
서초구	푸른환경과	02-2155-6481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031-860-2257		
부산	성동구	맑은환경과	02 2286 5496	부천시	환경과	032 625 3163		
	성북구	환경과	02-2147-3274	성남시	기후대기과	031-729-3642		
	영등포구	환경과	02-2670-3470	수원시	기후대기과	031-228-2455		
	영유구	맑은환경과	02-2199-7674	사천시	환경정책과	031-310-5951		
	중랑구	맑은환경과	02-2094-2445	안산시	산단환경과	031-481-2904		
	성북구	환경과	02-2241-3043	안성시	환경과	031-678-2633		
	영천구	녹색환경과	02-2620-4875	안양시	환경보전과	031-8045-2248		
	관악구	녹색환경과	02-879-6262	안주시	환경관리과	031-8082-6331		
	본청	환경정책과	051-8888-3651	양평군	환경과	031-770-2257		
	중구	환경위생과	051-600-4384	여주시	환경과	031-887-2253		
대구	동구	환경위생과	051-440-4386	연천군	환경보호과	031-839-2252		
	영도구	환경위생과	051-419-4394	오산시	환경과	031-8036-6422		
	부산진구	환경복지과	051-605-4395	음성시	기후에너지과	031-324-2244		
	남구	환경위생과	051-607-4382	의령시	환경과	031-345-3813		
	북구	환경위생과	051-309-4395	의정부시	환경정책과	031-828-4423		
	사하구	환경위생과	051-220-4394	이천시	환경보호과	031-644-2360		
	금정구	환경위생과	051-519-4384	파주시	환경보전과	031-940-8475		
	강서구	환경위생과	051 970 4384	평택시	환경정책과	031 8024 3757		
	연제구	환경위생과	051-665-4382	포천시	환경지도과	031-538-2257		
	동대구	환경위생과	051-550-4392	하남시	환경보호과	031-790-5882		
인천	수영구	환경위생과	051-610-4392	화성시	기후환경과	031-430-4512		
	서상구	환경위생과	051-310-5172	김천시	환경관리과	02-2680-2695		
	해운대구	환경위생과	051-749-4394	과천시	환경위생과	02-3677-2247		
	기장군	환경위생과	051-709-4384	본청	환경과	033-249-4141		
	본청	기후대기과	063-803-5275	순천시	기후에너지과	033-250-4328		
	대기보전과	032-440-3505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033-737-3043			
	산간지역	대기보전과	032-440-3424	강릉시	환경과	033-640-5356		
	천안	위생환경과	032-760-7402	홍천군	환경과	033-430-2622		
	동구	환경위생과	032-770-6527	영월군	환경위생과	033-370-2387		
	미추홀구	환경보전과	032-880-4346	청진군	환경과	033-560-2354		
전남	연수구	환경보전과	032-749-7914	철원군	정청환경과	033-450-4779		
	남동구	환경보전과	032-453-2612	인제군	환경보호과	033-460-2061		
	부평구	환경보전과	032-509-6653	영광군	환경과	033-670-2182		
	계양구	환경과	032-450-5414	본청	기후대기과	043-201-4345		
	서구	환경관리과	032-560-4632	청주시	기후대기과	043-201-4652		
	강화군	환경위생과	032-930-3333	충주시	기후에너지과	043-850-3682		
	홍천군	환경복지과	032-899-2612	제천시	자연환경과	043-641-6394		

지역	지자체	부서명	전화번호	지역	지자체	부서명	전화번호
충북	보은군	환경위생과	043-540-3532	전남	영암군	환경보전과	061-470-2332
	옥천군	환경과	043-730-3443		무안군	환경과	061-450-5567
	영동군	환경과	043-740-3404		함평군	환경심사수도과	061-320-1822
	충주군	환경위생과	043-835-3616		영광군	도시환경과	061-350-5378
	진천군	환경과	043-539-3455		장성군	환경위생과	061-390-7332
	괴산군	환경위생과	043-830-3612		원도군	환경실험과	061-550-5501
	음성군	환경과	043-871-3812		진도군	환경실험과	061-540-3708
	단양군	환경과	043-420-2662		신안군	세계유산과	061-240-8154
	본청	환경보전과	041-635-4444		본청	환경안전과	054-880-3555
	천안시	환경정책과	041-521-5409		포항시	환경정책과	054-270-3094
충남	공주시	환경보호과	041-840-8528	경주시	환경과	054-779-6370	
	보령시	환경보호과	041-930-3672	김천시	환경위생과	054-420-6681	
	아산시	환경보전과	041-540-2748	안동시	환경관리과	054-840-5284	
	서산시	환경생태과	041-660-3167	구미시	환경보전과	054-480-5275	
	논산시	환경과	041-746-5523	영주시	환경보호과	054-639-6782	
	계룡시	환경위생과	042-840-2472	영천시	환경보호과	054-330-6037	
	당진시	환경정책과	041-360-6568	성주시	환경관리과	054-537-7358	
	금산군	환경자원과	041-750-2514	경산시	환경관리과	054-550-6186	
	부여군	환경보호과	041-830-2303	경산시	환경과	053-810-5478	
	서천군	환경보호과	041-950-4099	군위군	환경위생과	054-380-7953	
전북	창녕군	환경보호과	041-940-2245	성주군	환경추진과	054-870-6182	
	홍성군	환경과	041-630-1456	영덕군	환경위생과	054-730-6583	
	예산군	환경과	041-339-7507	청주군	환경과	054-370-6187	
	내안군	환경실험과	041-670-2788	고령군	환경과	054-950-6513	
	본청	자연생태과	063-280-4188	성주군	환경과	054-930-6183	
	진주시	환경위생과	063-281-2408	성북군	환경관리과	054-979-6694	
	군산시	환경정책과	063-454-3402	예천군	환경관리과	054-650-6185	
	익산시	녹색환경과	063-859-5432	봉화군	녹색환경과	054-679-6406	
	정읍시	환경과	063-539-5713	울진군	환경위생과	054-789-6713	
	남원시	환경과	063-620-6913	본청	기후대기과	055-211-6674	
전남	완주군	환경과	063-290-2684	원주시	환경정책과	055-225-3524	
	김제시	환경과	063-540-3780	진주시	환경관리과	055-749-8638	
	무주군	환경위생과	063-320-2338	통영시	환경과	055-650-5422	
	장수군	환경위생과	063-350-2531	사천시	환경위생과	055-831-2769	
	송광군	환경수도과	063-650-1247	김해시	기후대기과	055-330-3363	
	본청	환경관리과	061-286-7162	밀양시	환경관리과	055-359-5317	
	목포시	환경보호과	061-270-8470	거제시	환경과	055-639-3953	
	여수시	기후환경과	061-659-3885	양산시	환경관리과	055-392-2632	
	순천시	생태환경과	061-749-5770	의령군	환경관리과	055-570-2614	
	나주시	환경관리과	061-339-8932	함안군	환경과	055-580-2423	
전북	광양시	환경과	061-797-2331	창녕군	환경위생과	055-530-1613	
	남원시	생태환경과	061-380-3080	고성군	환경과	055-670-2412	
	곡성군	환경속신과	061-360-8332	남해군	환경복지과	055-860-3273	
	구례군	환경교육과	061-780-2128	미동군	환경보호과	055-880-2573	
	고흥군	환경실험과	061-830-5260	함양군	환경위생과	055-960-4110	
	보성군	환경생태과	061-850-5347	거창군	환경과	055-940-3493	
	화순군	환경과	061-379-3595	합천군	환경위생과	055-930-3312	
	장흥군	환경관리과	061-860-0326	본청	생활환경과	064-710-4112	
	강진군	환경추진과	061-430-3302	재주	환경지도과	064-728-3133	
	해남군	환경교통과	061-530-5337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064-760-2922	

더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대기마당/
부서별 자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업무지침' 참고하시거나 지역별 지자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안내



지원대상

아래 대기배출시설(1~5종) 운영 사업장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배출 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지원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 5년 이내 예산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 불가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부착(의무)

지원금액

- 지원 한도내에서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90%지원**
(10%는 사업자 부담)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구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반	RTO, RCO, SCR 전기 집진시설	
지원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7.2억원

- 사물인터넷(IoT) 또한 **설치 비용의 90% 지원**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10%는 사업자 부담)

사업절차



Q&A

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 등을 직접 선정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등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지시설 설치 공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등록된 업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단,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ex: 저녹스버너)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대기미당/부서별 자료/대기총량과/2018년도 환경전문공사현황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서 말하는 사물인터넷이 무엇인가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방지시설에 계측기(차압계, 압력계, 온도계 등)와 통신장비(IoT 게이트웨이, VPN 등)를 설치한 후 인터넷에 연결하여 **방지시설 적정 운영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지 않은 굴뚝**에 연결된 방지시설을 **사물인터넷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이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해 설치비(최대 410만원 정도 소요) 일부를 보조(최대 369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물인터넷 설치 공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사물인터넷은 환경전문공사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IoT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굴뚝 TMS 설치시에는 보조금 지원 안되나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4) 이전 굴뚝TMS 조기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TMS 설치운영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 1

환 경 부
대 기 관 리 과

목 차

1. 개 요	1
2. 보조사업 추진	2
3. 방지사설·사물인터넷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등 ...	6
4.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시기 및 장치사양	10
5.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13
6. 보조금 회수 및 정산	15
7. 보조사업 집행상황 제출 및 사후관리	16

1. 개 요

가. 목 적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 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

나. 근 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
2.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환경부 훈령 제1323호, 2018.4.18.)
(이하 “보조금지급규정”이라 한다)

다. '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계획

사 업 비 : 440,000백만원

○ 국비 220,000백만원, 지방비 176,000백만원, 자부담 22,000백만원

사업방식 :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부담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20년도 시·도별 사업예산 >

(단위 : 백만원)

시·도	국 비	지방비	시·도	국 비	지방비
계	220,000	176,000	경기	75,760	60,608
서울	5,646	4,517	강원	4,880	3,904
부산	6,560	5,248	충북	13,440	10,752
대구	19,138	15,310	충남	12,010	9,608
인천	16,920	13,536	전북	8,540	6,832
광주	4,190	3,352	전남	8,530	6,824
대전	2,016	1,613	경북	18,750	15,000
울산	2,000	1,600	경남	19,230	15,384
세종	500	400	제주	1,890	1,512

※ 시·도별 사업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보조사업 추진

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 (환경부) 사업 추진방향 설정, 사업관리 및 예산편성 등
- (유역·지방환경관서) 보조금 교부, 집행사항 관리 및 정산 등
- (지자체) 수요조사, 예산 및 보조금 신청, 예산집행, 사업 추진사항 관리, 정산자료 제출 등

※ 지자체장은 전문기관(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에 기술자문 가능

나.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등

- (집행계획 수립) 지자체장은 '20년도 보조사업 계획수립 시 지원대상 사업장 현황 및 사업물량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집행계획 수립
- (지방비 보조) 지자체장은 국고보조금 집행 시 지방비 보조금 비율 (40%) 이상의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
- (집행 준수사항) 지자체장은 보조금 집행 시 대기환경보전법, 보조금법 및 동 지침, 보조금지급규정 등에서 정한 사업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 보조금 용도 및 관리

- (보조금 용도) 보조금 집행은 '20년 보조금 지침 상'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사물인터넷 설치 포함)에 한함
 - (별도계정 관리) 지자체장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관리) 지자체장은 보조금 집행이 취소·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의 방지시설 시공, 방지시설별 보조금 지원 한도, 사물인터넷(IoT) 부착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라.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 교부결정 취소 등

- (교부신청 및 교부) 지자체장은 매월 시작 10일 전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1 서식)를 관할 유역(지방)환경관서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 기관 >

유역(지방청)	지자체	유역(지방청)	지자체
수도권청	서울, 인천, 경기	원주청	강원도, 충북(충주시 등 5개 시·군)
낙동강청	부산, 울산, 경남(하동, 남해 제외)	대구청	대구, 경북
금강청	대전, 충남, 세종, 충북(청주시 등 6개 시·군)	전북청	전북
영산강청	광주, 제주, 전남, 경남(하동, 남해)		“여 백”

- 지방환경관서장은 지자체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 실적, 지방비 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매월 10일 이내에 교부**(붙임 2 서식)
 - 지자체장이 사업물량 변경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수시 신청하는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
- 지자체장과 지방환경관서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19년 이월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20년 예산이 연내에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환경관서장은 교부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음
 - 지방환경관서장은 보조금 결정사항을 변경·취소한 경우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지자체장은 해당하는 보조금(이자 포함)을 지방환경관서장에게 반납
 - ※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보조금 지급 제한)** 지자체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보조금 지급 제한 가능

마. 보조금 지원(제외)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우선지원)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음)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여야 함

바. 방지시설 설치 사업 참여 기준 및 사업장 선정

- (사업 참여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업체**

- 사물인터넷은 환경전문공사업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 (사업장 선정)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지자체
 장에게 제출

○ 지원 사업장은 방지사설 견적서 등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
 하고, 지자체(심사위원회)*는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승인

* 동 지침에 의한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92호)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대체가 가능하며,
 보조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음

3. 방지사설 및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등

가. 방지사설

□ 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사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설치비 한도 최대 5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4.5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사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

- 필요 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사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사설	가스상물질 방지사설		조합 및 공동방지사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7.2억원

□ (방지사설 보조금액)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사설 종류 및 시설
 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입자상 및 가스상물질 2.7억원, RTO 등 4.5억원, 공동방지사설 3.6억원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m ³ /분	3,307	2,977	1,654	1,323
		200m ³ /분	4,791	4,312	2,396	1,916
		300m ³ /분	6,028	5,425	3,014	2,411
		400m ³ /분	7,593	6,834	3,797	3,037
		500m ³ /분	8,690	7,821	4,345	3,476
원심력집진시설		100m ³ /분	1,300	1,170	650	520
		200m ³ /분	2,400	2,160	1,200	960
		300m ³ /분	2,800	2,520	1,400	1,120
		400m ³ /분	3,900	3,510	1,950	1,560
		500m ³ /분	4,700	4,230	2,350	1,880
흡수에 의한 시설	먼지용	100m ³ /분	3,508	3,157	1,754	1,403
		200m ³ /분	4,568	4,111	2,284	1,827
		300m ³ /분	5,629	5,066	2,815	2,251
		400m ³ /분	7,391	6,652	3,696	2,956
		500m ³ /분	9,250	8,325	4,625	3,700
	가스용	100m ³ /분	3,659	3,294	1,830	1,464
		200m ³ /분	4,846	4,361	2,423	1,938
		300m ³ /분	5,929	5,337	2,965	2,372
		400m ³ /분	7,640	6,876	3,820	3,056
		500m ³ /분	9,586	8,627	4,793	3,834
흡착에 의한 시설		100m ³ /분	1,706	1,535	853	682
		200m ³ /분	3,034	2,731	1,517	1,214
		300m ³ /분	3,544	3,190	1,772	1,418
		400m ³ /분	4,667	4,201	2,334	1,867
		500m ³ /분	5,612	5,051	2,806	2,245
RTO		100m ³ /분	13,400	12,060	6,700	5,360
		200m ³ /분	18,760	16,884	9,380	7,504
		300m ³ /분	25,320	22,788	12,660	10,128
		400m ³ /분	32,916	29,624	16,458	13,166
		500m ³ /분	41,145	37,031	20,573	16,458
RCO		100m ³ /분	20,000	18,000	10,000	8,000
		200m ³ /분	30,000	27,000	15,000	12,000
		300m ³ /분	43,900	39,510	21,950	17,560
		400m ³ /분	52,000	46,800	26,000	20,800
		500m ³ /분	60,000	54,000	30,000	24,000
SCR		100m ³ /분	24,000	21,600	12,000	9,600
		200m ³ /분	28,000	25,200	14,000	11,200
		300m ³ /분	31,500	28,350	15,750	12,600
		400m ³ /분	36,500	32,850	18,250	14,600
		500m ³ /분	42,000	37,800	21,000	16,800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0.1톤이상 0.3톤미만	2,760천원	2,484천원	1,774천원	710천원
	0.3톤이상 0.5톤미만	4,823천원	4,341천원	3,101천원	1,240천원
	0.5톤이상 0.7톤미만	6,549천원	5,894천원	4,210천원	1,684천원
	0.7톤이상 1톤미만	7,406천원	6,665천원	4,761천원	1,904천원
	1톤이상 2톤미만	8,014천원	7,213천원	5,152천원	2,061천원
	2톤이상 3톤미만	8,494천원	7,645천원	5,461천원	2,184천원
	3톤이상 4톤미만	10,536천원	9,482천원	6,773천원	2,709천원
	4톤이상 5톤미만	11,247천원	10,122천원	7,230천원	2,892천원
	5톤이상 6톤미만	12,397천원	11,157천원	7,969천원	3,188천원
	6톤이상 7톤미만	13,120천원	11,808천원	8,434천원	3,374천원
	7톤이상 8톤미만	14,102천원	12,692천원	9,066천원	3,626천원
	8톤이상 10톤미만	15,627천원	14,064천원	10,046천원	4,018천원
	10톤이상	16,896천원	15,206천원	10,861천원	4,345천원
전기집진시설	100m ³ /분	20,000	18,000	10,000	8,000
	200m ³ /분	30,000	27,000	15,000	12,000
	300m ³ /분	43,900	39,510	21,950	17,560
	400m ³ /분	52,000	46,800	26,000	20,800
	500m ³ /분	60,000	54,000	30,000	24,000
기타시설	100m ³ /분	2,697	2,427	1,349	1,079
	200m ³ /분	3,928	3,535	1,964	1,571
	300m ³ /분	4,787	4,308	2,394	1,915
	400m ³ /분	6,239	5,615	3,120	2,496
	500m ³ /분	7,568	6,811	3,784	3,027

-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총당하여야 함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kcal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kcal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주4)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5)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금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6)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방지시설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 (보조금 산정) 방z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방z시설 설치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

< 산정 예시 >

- ◇ 여과집진기 300m³/분 초과, 400m³/분 미만 방z시설 설치비는 300m³/분 (6,028만원)과 400m³/분(7,593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350m³/분 설치비* : 6,028만원 + 782.5만원 = 6,811만원
 - * 300m³/분 설치비 + 10m³/분(7,593 - 6,028) /10) 당 설치비×5 = 782.5만원
 - 시설용량 360m³/분 설치비* : 6,028만원 + 939만원 = 6,967만원
 - * 300m³/분 설치비 + 10m³/분(7,593 - 6,028) /10) 당 설치비×6 = 939만원
- ◇ 여과집진기 500m³/분 초과 방z시설 설치비는 500m³/분 방z시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600m³/분 설치비* : 8,690만원 + 1,738만원 = 10,428만원
 - * 시설용량 500m³/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00m³/분 당 설치비 (8,690만원 × 100/500=1,738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시설용량 650m³/분 설치비* : 8,690만원 + 2,607만원 = 11,297만원
 - * 시설용량 500m³/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50m³/분 당 설치비(8,690만원 × 150/500 = 2,607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나. 사물인터넷

□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 차압계·압력계 등 기기별 부착비용은 30~160만원

<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분	계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단가 (부가세 제외)		
		차압계 (압력계)	온도계	전류·전력 계측기*		IoT 게이트웨이	VPN	계	국비	지방비
				배출시설	방z시설					
여과집진	350	40	50	30	30	160	40	315	175	140
흡착설비	350	40	50	30	30	160	40	315	175	140
원심력집진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흡수·세정	410	pH계 100	50	30	30	160	40	369	205	164
전기집진	340	전류계 30	50	30	30	160	40	306	170	136
RTO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RCO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SCR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기타시설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 ID(유인송풍기), FD(압입송풍기) 팬,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4.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부착시기 및 장치사양

□ (부착대상)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계측기 부착 및 IoT 게이트웨이 설치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계측기 부착
- 향후,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중 TMS 부착 대상 골뚝에 연결된 방지시설은 사물인터넷 부착 대상에서 제외

* 연간 SOx 4톤 초과 또는 NOx 4톤 초과 또는 먼지 200kg 초과 배출사업장

< 사물인터넷 구성 >

구 분	장치의 기능	구 분
계측기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20년 설치지원
IoT 게이트웨이	계측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제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계측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 (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시스템 (관제시스템)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제시스템	'20년 관제시스템 구축 후 자료 수신

※ 방지시설에 설치된 계측기(또는 IoT 게이트웨이)는 「2019년 IoT 기술을 활용한 방지시설 관리 시범사업」 이후 규정 및 지침 변경 시 원격으로 계측기(또는 IoT 게이트웨이) 운영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20년 관제시스템 구축 후 측정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함

※ 그 외 사항은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19.07.) 참조

□ (설치시기) 사물인터넷은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동시에 완료(진행)

□ 사물인터넷(계측기) 장치사양

○ 차압계 · 압력계

구 분	사 양
측정 대상 및 범위	기체, 0 ~ 500mmH ₂ O
출력신호	4 ~ 20mA*
오차	±0.5% 이내
Display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Operating Temperature	-20 ~ 6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무게	1kg 이하(배관에 설치 시 배관에 무리가 없어야 함)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pH계

구 분	사 양	비고
측정 범위	0 ~ 14 pH	pH 전극
사용 온도	0 ~ 80℃	
케이블	5m 이상(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의 영향이 없어야 함	
기능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pH Controller
측정 범위	0 ~ 14 pH	
분해능	0.1pH 이하	
정밀도 및 재현성	±0.6% 이하	
출력 신호	4 ~ 20mA*	
온도 보상	0 ~ 50℃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의 영향이 없어야 함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온도계

구 분	사 양
측정 범위 및 타입	-40℃ ~ 100℃ 이상, Pt 100Ω, 열전대 등
오차	±1.5℃ 또는 ±1.0%RD 중 큰값
Display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길이	50cm ~ 2m(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출력신호	4 ~ 20mA*
Operating Temperature	-20 ~ 60℃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기타	설치 플랜지 포함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전류계

구 분	사 양
측정 범위	0 ~ 600A*
출력신호	4 ~ 20mA**
오차	±2% 이내
Operating Temperature	-20 ~ 60℃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기타	설치 시 현장 설비에 영향이 없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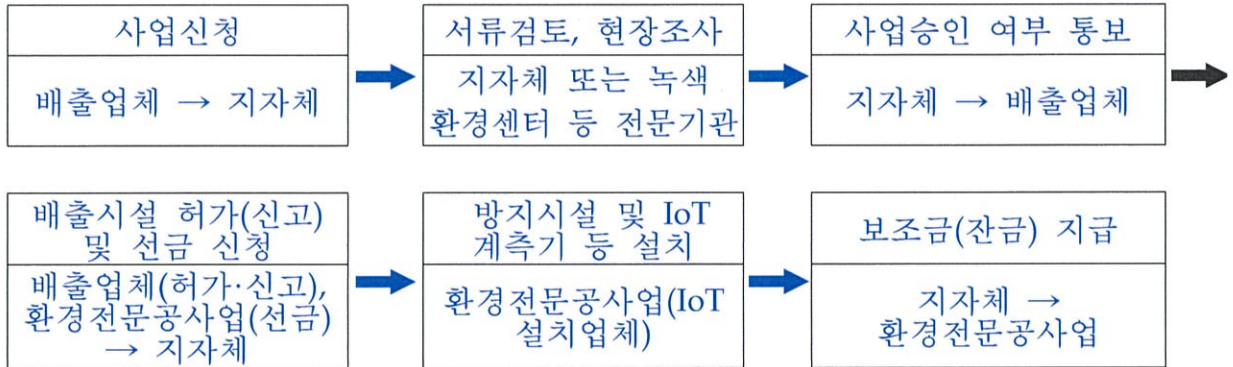
* 측정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상이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전류계를 사용하는 목적이 시설장비의 가동여부(on/off)인 경우에는 전류계를 대신하여 전자접촉기(Magnetic Switch)의 보조접점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5.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 방지사설 등 설치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①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방지사설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붙임3 서식)를 지자체에 제출

○ 신청서, 방지사설의 종류, 시설용량 및 설치 견적서 등 제출

※ 지자체는 사업시행 공고 등을 통하여 지원사업을 사전에 안내

②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방지사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 협조를 통하여 현장조사하며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저녹스버너)의 경우 방지사설 종류 및 설치비용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음

< 기술자문료 >

◇ 사업비의 5%(100만원 한도)를 신청서류 검토, 현장조사 비용으로 전문가(기관, 단체)에게 지급

- 다만,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기술자문료의 50%는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 예산(25억)에서 우선 사용

③ **(사업승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통보(붙임4 서식)

④ **(허가 등 신청)**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서 제출 및 허가(신고수리)

○ 배출업체는 방지사설 설치 전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 계약 체결 및 선금 신청 >

- ◇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방지사설 설치 공사 계약 체결
 - 자부담금은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은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직접 수령하도록 명시
- ◇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방지사설 설치 공사에 대한 선금을 신청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방지사설 설치 공사가 1개월 내에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선금을 반환하여야 함
 - 선금 신청서와 함께 증권·보증서 등 채권 확보 서류, 통장 사본, 그 밖의 선금 수령 대상 증빙 서류 등 제출

⑤ (방지사설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사설 설치 완료

- 방지사설 교체 후 배출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실시

⑥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전문공사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 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전 당초 제시한 방지사설 및 계측기가 설치계획대로 설치되었는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보조금 신청 >

- ◇ 방지사설 및 사물인터넷을 시공한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붙임5 서식)
 - 보조금 청구는 당해 연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12월 24일까지 청구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붙임6 서식),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6. 보조금 회수 및 정산

가. 보조금 회수

- (보조금 환수)** 지자체장은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 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붙임7 서식)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 (보조금 제한 또는 회수의 예외)** 방지시설 미가동 사유가 아래와 같이 명백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회수 보조금 사용 및 상계)** 회수한 보조금은 당해연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사용 가능

나. 보조금 정산

- (정산시기)** 지자체장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정산하여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붙임8 서식)

- **(정산이자 반납)** 지자체장은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사업 완료 후 국고에 반납 조치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
- **(이월 예산)** 지자체장은 '19년도 사업의 이월 예산에 대해 현행 국고 보조금 지침에 따른 보조금 한도 및 지원기준에 따라 집행
- **(정산결과 검토)** 지방환경관서장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조사업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최종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보조사업 수행기관에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
 - 정산 완료 후 지방환경관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정산결과를 보고

7. 보조사업 집행상황 제출 및 사후관리

- **(집행사항 제출)** 지자체장은 매월 15일과 말일 기준 보조금 집행 실적을 당월 20일(15일 기준), 익월 5일(말일 기준)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붙임9 서식)
 - 지자체장은 지방환경관서장 요구 시 수시(주 단위)로 집행사항을 파악하여 제출
- **(관리실태 확인)** 지자체장은 국고보조금을 받아 방지시설을 설치한 배출업체의 방지시설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관리실태 확인
 -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및 점검결과 등 배출수준을 모니터링(반기 1회 이상)

【붙임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보조사업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설치지원 사업
- 보조사업자 : 000 도지사
- 예산과목 :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설치지원 사업(0000-0000-000-00)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내역

(단위 : 대, 백만원)

시·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 잔액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 교부조건

-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
-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
-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실적보고를 철저히 이행
- 라. 국고보조금의 집행시 예산회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

○ ○ ○ ○ ○ ○ 청장

【붙임 4】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승인결과 통보

귀하께서 신청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승인 사항대로 사업을 적정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승인 내역 〉

사업자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설치예정 방지시설				
방지시설 종류		시설용량	수 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⑤ 설치예정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종류			수 량	
⑥ 착공 및 준공예정일		2020. . ~ 2020. . (공사 소요기간 : 개월 일)		
⑦ 시설 설치비	만원		⑦ 예상 보조금	만원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				

【붙임 6】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방지시설	종류 : 시설용량 :
	사물인터넷	부착된 계측기 :
	사업기간(일자)	2020. . . ~ 2020.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지자체장 귀중

【붙임 7】

보조금 반납 약속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방지시설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붙임 8】

'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정산보고

사업명	보고기관	보고기준일

(담당부서, 작성자, 전화번호)

2. '20년 재원별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계	시범사업	추경사업
계				
국비				
지방비	소 계			
	시·도비			
	시·군비			

3. 예산집행실적

당해연도 결산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국비								
지방비	소 계							
	시·도비							
	시·군비							

○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
-

4. 지출증빙서류 : 매(별송)

※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사본 등과 같이 장비 구입내역 및 금액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5.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엑셀표로 작성)

(단위 : 만원)

구 분	사업장명	업 종	주 소	방지사설			사물인터넷	
				종류	시설 용량	보조금	계측기 종류	보조금
시·도 (시·군·구)								

2020. . .

작성자 : 시·도(시·군·구) 0000과 직위(급) 성명 0000(인)

확인자 : 시·도(시·군·구) 0000과 0000과장 성명 0000(인)

【붙임 9】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설치지원 사업추진 상황 보고

(2020. 월)

총 사업비 및 실집행액

- 총사업비 : 원(국비 원, 지방비 원)
- 실집행액 : 원(국비 원, 지방비 원)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 지원계획 사업장 : 개 사업장, 개 방지사설
- 사업신청 사업장 : 개 사업장, 개 방지사설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엑셀표로 작성)

(단위 : 만원)

구 분	사업장명	업 종	주 소	방지사설			사물인터넷	
				종류	시설 용량	보조금	계측기 종류	보조금
시·도 (시·군·구)								

□ 예산집행

(단위 : 원)

구분	예산			실집행액(지방비 포함)		지원 사업장 수		실집행율 (D/C)
	환경부 교부액 (A)	지방비 (B)	예산현액 (지방비 포함) (A+B=C)	금월 집행액	집행액 누계 (D)	금월 지원 사업장	지원사업장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 . .

작성자 : 시·도(시·군·구) 0000과 직위(급) 성명 0000(인)

확인자 : 시·도(시·군·구) 0000과 0000과장 성명 0000(인)